제268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11. 28.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년 11월 28일
전문위원 정 우 숙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2019 - 86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다. 제출일자: 2019년 11월 5일
라. 회부일자: 2019년 11월 20일

2. 개정이유

「지역보건법」 제26조가 제34조로 변경되어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을 「지역보건법」 제26조에서 제34조로 변경 (안 제1조, 제3조, 별표)
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변경 (안 제5조)

다. 과태료 부과대상을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맞게 변경(안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역보건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 9. 25. ~ 10. 15.)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

○ 상위법인「지역보건법」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나. 종합 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과태료 부과 근거 및 징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 관계 법령

□ 지역보건법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